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
----------	-----

2023. 1. 19.(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월 16일

-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의 지역 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 조정 (안 제6조제4항)
 - (현행) 100분의 30 → (개정) 100분의 50
- 채권 매입대상 기준 상향 (안 별표 1)
 - (자동차 신규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삭제>
 - (자동차 이전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삭제>
 - (각종 계약체결) 총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면제 → 2,000만원 미만 면제
- 공채 매입 면제 대상 추가 (안 별표 2)
 -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에 '배우자'를 추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를 "퍼센트"로 용어 정비 (안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인상 및 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여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제4항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현재 15개 시·도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역개발채권 개요 및 현황]

-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 제19조
 -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 /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 (금리) 2.5%
- (상환)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 안 별표1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총복도와 2천만 원 미만의 각종 계약(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 안 별표1로 개정시 향후 5년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11,333백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 안 별표2는 공채의 매입면제대상에 배우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전 시, 충청도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분 야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 동 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8/100 취득세과표의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2/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1/100
2. 자 동 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 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0.5/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	취득세과표의 0.5/100

분 야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기타 허가 및 등록	가.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1년이상 장기허가하는 최초 점용료 부과시만 매입)	점용료부과액의 5/100
	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① 농지(전,답) ②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등 기타지목	m ² 당 1,500원 동지역 : m ² 당 3,000원 읍·면지역 : m ² 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m ² 당 60원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100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

[별표 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제8조 관련)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1. 기관·단체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p> <p>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p> <p>마.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p> <p>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p> <p>사. 「민법」·「상법」 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공채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p> <p>아. 「정당법」에 의한 정당</p> <p>자.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p> <p>차. 제사, 종교, 학술, 예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관련부처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p>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2. 사업·행위	<p>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p> <p>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5)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p>다. 주민 직영사업</p> <p>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축 및 농·임·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단,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임·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다.</p> <p>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p> <p>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의 구매</p> <p>사.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도로·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p> <p>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허가·계약</p> <p>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개조·수선 및 대체취득시의 등록, 허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p> <p>차.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의 신규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p> <p>카. 법인 합병 및 분할시의 자동차 이전등록</p> <p>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 3.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생략)</p> <p>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u>10%</u> 범위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10퍼</u> <u>센트</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 ③ (생략)</p> <p>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u>100분의 30</u>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p>	<p>제6조(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100분의 50</u> ----- ----- -----.</p>
<p>제8조(공채매입 면제) ① (생략)</p> <p>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u>50%</u>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p>	<p>제8조(공채매입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50퍼센트</u> ----- ----- ----- -----.</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기금 설치 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충청북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도나 시·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나 시·군 또는 도나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채매입 면제)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의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및 공급

2. 비용 발생 요인

- 수입: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예탁금·용자금 이자 회수 수입
- 지출: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별표 1, 별표 2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3년 ~ 2042년 (20년간)
 - ※ 채권 상환기간: 5년거치 일시상환, 용자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상환
- 재정수반요인
 -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권 매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1.97%) 및 매입 대상 기준 상황에 따른 △10.5% 감액 적용
 - 채권 이자 상환: 발행이율 연 2.5% 복리 적용, 2028년부터 상환 개시
 - 예탁금, 용자금 이자수입: 용자이율 3.0% 적용
 - ※ 예탁금, 용자금: 최근 10년간 예탁 및 용자 평균금액 적용

나. 추계 결과

- 향후 20년간 수입 65,133백만원 감소, 지출 43,477백만원 감소 예상
 -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11,333백만원 감소
 - 예탁금 이자수입: 28,875백만원 증가
 - 용자금 이자수입: 17,325백만원 증가
 -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금액: 111,333백만원 감소
 -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금액: 67,856백만원 증가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붙임

6. 작성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송병무

